성남시 공고 제2026-2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하여 동법 제101조(과태료) 제4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4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: 「동물보호법」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6.3.13. ~ 2026.4.3. (21일간)

3. 송달내용

회계 과목명	대상자	주 소	위반사항	문서제목	반송사유
동물보호법 과태료	김*원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53번길 10-4, ***호	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동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음	「동물보호법」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	폐문부재

4. 근거법령

○ 동물보호법 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제2항
○ 동물보호법 제101조(과태료) 제4항제1호
○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

5. 유의사항

가.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(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)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교부 요청하여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또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(☎031-729-329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3일

성 남 시 장